

## 상담사-내담자 계약관계에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

이 아 람†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상담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민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논의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담계약에 적용시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를 살펴보았다. 상담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상담사의 인적 요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사와 수요자인 내담자 사이에 상담 및 상담사에 관한 정보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공정한 상담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많은 상담사가 계약 체결 전 내담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의 계약체결 의사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미국 각 주의 법률 중 상담사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의 규정 내용은 크게 정보제공의 시기 및 방법, 정보의 내용, 상담사의 정보제공 관리 방안으로 분류되고, 정보의 내용은 다시 상담사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리 기관 및 민원절차에 대한 정보로 구분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설명서, 상담계약, 상담의 법제화, 미국의 상담사법

\* 본 연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이아람,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589, E-mail: leeyalan@korea.ac.kr

한국에서 전문상담의 영역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학교, 기업체, 군대, 사설 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영근 등, 2012).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상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상담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상담과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상담을 전문직화하기 위한 논의(명대정, 2000)를 필두로 상담 관련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증제 도입에 관한 논의(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이숙영, 김창대, 2002), 현재 만연해 있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을 통합하여 국가자격화하기 위한 논의(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김인규, 2018) 뿐 아니라 상담을 법적,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상담사 관련 법 제정에 관한 논의(김영근 등, 2012; 김정진, 2016)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상담 영역의 전문화 및 제도적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상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상담이 무엇이고 어떠한 자격의 사람들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뿐 아니라 상담의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상담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상담 영역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상담 관련 자격은 학회나 민간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수여되는 민간자격증으로 이루어져 있다(곽미용, 이영순, 2010). 이러한 현행 상담사 자격제도 속에서는 유사한 명칭의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 사이에서도 그 교육, 수련, 경험 등의 차이가 크고, 내담자들에게 제공되는 상

담의 양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 뿐 아니라 상담 서비스의 수요자인 내담자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다(곽미용, 이영순, 2010). 또한 상담 및 상담사를 규율하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상담사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각각의 학회 또는 민간단체가 제시하는 윤리 강령에 의거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 기관의 윤리 강령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산발적인 자격증과 윤리 규정은 상담사들의 정체성 발달을 저해하여 전문성 신장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Gale & Austin, 2003) 궁극적으로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달성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상담의 잠재적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상담을 명확히 규율하고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이인호, 2009; Remley & Herlihy, 2010), 상담을 법으로 규율하게 된다면 상담사와 내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치유,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는 상담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담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담사들이 현행법을 이해하고 현행법 체계 안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취득한 자격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상담을 현행 민법상의 계약관계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민

법은 일반법으로서 주체, 대상, 상황 등의 제한 없이 사인(私人) 간의 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김준호, 2018) 상담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상담 관계를 계약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공정한 상담 서비스 계약의 체결을 위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내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상담사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미국 각 주(州)의 법 규정 내용을 비교·범주화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의 수요자인 내담자에게 상담계약 체결 전에 제시되어야 할 기본 정보에 대해 제언한다.

## 계약으로서의 상담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 서비스계약으로서의 상담계약

우리나라 민법 제3편 채권편에서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즉 채권과 채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채권·채무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김준호, 2018). 때문에 채권법은 임의규정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 채권법의 규정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인해 변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당사자 사의의 신뢰,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다(김준호, 2018).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의 대표적인 형성 근거가 바로 계약이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

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다(김준호, 2018). 우리 민법은 제554조부터 제733조를 통해 대표적인 15종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형계약 이외에도 당사자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김준호, 2018). 상담의 경우, 상담사와 내담자라는 두 계약 당사자가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서비스 계약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서비스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김종길, 2017). 상담 관계 또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체결되는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시작되는 계약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다(김기우, 2011). 즉,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담자는 이에 대한 합의 및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서 상담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에는 별도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김상중, 2013). 따라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문서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관계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 계약자유의 원칙 및 그 제한

두 당사자가 아무런 방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일 뿐 아니라(김상중, 2013)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

는바,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들어 있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계약의 자유란 계약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1999. 5. 27.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병합) 전원재판부).”고 판시하여 계약자유 원칙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 자유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권리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 받지 않을 자유”도 계약자유 원칙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전원재판부).

이러한 계약자유 원칙에 따르면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 및 분석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결정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김전면, 2015; 최현숙, 2006).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정보가 방대한 현대 사회에서 계약의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지식이나 정보량이 풍부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의 내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스스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최현숙, 2006). 일방 당사자의 부족한 정보로 인해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의 자유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계약의 실현이라는 가치와의 균형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김상중, 2013). 헌법재판소 또한

“계약자유 원칙 내지 경제상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약자보호, 독점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1999. 5. 27.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병합) 전원재판부).

이처럼 공정한 계약의 성립을 위해 계약자유 원칙이 제한되어야 할 만큼 양 당사자의 정보량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는 특히 전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의료계약, 변호사계약, 보험계약, 여행계약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요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해당 정보를 습득하고 파악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김중길, 2017; 최현숙, 2006). 특히 서비스는 무형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그 서비스의 품질이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최현숙, 2006). 뿐만 아니라, 무형인 서비스는 제공됨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건처럼 교환, 환불 등이 불가능하여 서비스의 수요자를 사후에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최현숙, 2006).

상담의 경우, 상담이라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일 뿐 아니라 상담사 자체가 치료의 도구가 되는 서비스이다(김영근, 2013). 즉 상담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는 상담사 개인의 인간성과 특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상담사라는 인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최해림, 김영혜, 2006). 이 때문에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서는 상담 및 상담사에 관한 정보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무형인 상담 서비스가 무엇

이고,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기 전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난 후에는 내담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따라서 상담 서비스가 전문 서비스이고,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정보량의 격차가 현저하며,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취득 가능성이 낮고 취득 비용이 현저히 크다면,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담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과 정보제공의무

상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에 대한 위험을 계약 당사자인 내담자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의 양 당사자는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 분석 및 이해해야 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임건면, 2015).

하지만 사회의 여러 분야가 전문화 되면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정보량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보량이 적은 일방 당사자에게 동일한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스스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습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임건면, 2015). 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보의 양이 현저히 차이 나게 되는 경우, 정보량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게 되었다(송오식, 2009; 임건면, 2015).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 대입시켜 보면, 공정한 상담계약의 체결을 위해 상담에 대한 정보량이 많은 상담사가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은 내담자에게 계약 체결 전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의 체결을 위한 정보 취득 및 분석을 전적으로 두 당사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내담자가 상담계약 체결 시 공정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로 하여금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논의되는 것이 정보제공의무이다.

정보제공의무는 엄밀히 말하면 설명의무와는 구분된다. 설명의무는 의료계약에 따른 의사들의 의무로도 논의가 많이 되는데, 이는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송오식, 200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진료계약 성립에 따른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상담 분야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내담자에게 상담초기 구조화 단계에서

상담의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 주는 접수면접자 또는 상담사의 행동이 설명의무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정보제공의무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계약 체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제공할 의무이다(송오식, 2009). 즉, 아직 상담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잠재적 내담자에게 그 결정을 돕기 위해 상담이 무엇인지, 어떤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그 비용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정보제공의무인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제공의무와 설명의무의 두 개념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두 개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위계찬, 2007, 임건면, 2015). 명백한 점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공정한 상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상담사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학술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명문화된 법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보량이 많은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계찬, 2007).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규범과 외국의 민법에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임건면, 2015),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임형택, 2015).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보제공의무가 도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최현숙, 2006). 다만, 정보제공의무가 모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례별로 그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임건면, 20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제공의무는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량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정보제공의무자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제공의무자의 상대방이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임건면, 2015). 그 외에도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질과 유형을 고려하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전문지식 유무에 따른 전문가와 비전문가 관계일 것, 정보가 중요할 것, 정보량이 적은 당사자의 정보의 취득가능성이 낮고 정보취득 비용이 높을 것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상중, 2010).

####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

우리나라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두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계약관계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많은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은 전문적 지식, 기술, 정보에 기반 한 서비스일 뿐 아니라 상

담사 자체가 상담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인적 요소가 매우 중요시된다(김영근, 2013). 이 때문에 상담사에게도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보제공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내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즉 상담사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다. 상담계약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라 함은 치료의 도구가 되는 상담사 관련 내용, 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공개 되어야만 상담 계약을 체결하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이 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에게 사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 미국에서의 상담사 정보제공의무

#### 미국 법률 규정 검토의 의의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내담자에게 사전에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 각 주(州)의 상담사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법률 규정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크게 상담 영역의 측면과 법 영역의 측면이 있다. 먼저 상담 영역의 측면에서 미국 법률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전문상담의 역사가 길 뿐 아니라 모든 주에서 전문상담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을 정도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1976년 버지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전문상담사의 면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Gale & Austin, 2003) 1980년대부터 매년 여러 주에서 법률을 마련하여 왔고(Brooks & Gerstein, 1990) 현재는 모든 주에서 전문상담 및 상담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상담 실무 뿐 아니라 상담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오늘날에는 미국의 상담이 세계 각국의 상담 영역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Heppner, Leong, & Chiao, 2008; Leong & Bluestein, 2000). 한국에 처음 상담을 도입하게 된 것도 미국에서 상담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Lee, Suh, Yang, & Jang, 2012) 미국에서의 상담 이론, 실무, 제도 등이 한국 상담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상담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 상담의 법제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 영역의 측면에서 미국의 법률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에서는 상담을 규율하고 있는 독립된 법률이 없고 앞으

로 상담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논의들이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에 발 맞춰 미국의 법률 규정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신영수, 2010) 국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Wilson, 2007). 또한 미국의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김재원, 2008).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보통법(common law)에 기반하고 있는데, 성문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성문법과 판례법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고자 매우 자세하고, 복잡하고, 의도가 명확한 법률 규정을 두게 되었다(윤남순, 2002; Rubin, 1982). 또한 법률가들이 성문법을 보통법과 같은 법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절차에 많은 전문가, 국회, 학회, 여론 등을 반영하는 입법 절차도 마련해 왔다(Pound, 1908). 따라서 미국 법률의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한국에서 새로운 입법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각 주의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상담 실무 뿐 아니라 앞으로의 법제화 움직임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Code 또는 Statute의 형태로 집적된 법률 중 전문상담(professional counseling)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상담이 전문상담(professional counseling), 정신건강상담(mental health counseling), 임상적 상담(clinical counseling)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지칭되는데, 그 중 전문상담이 가장 널리 쓰

이는 개념이므로(Remley & Herlihy, 2010) 이하에서는 이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면허(license)를 취득한 전문상담사 뿐 아니라 부부 및 가족 치료사(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심리학자(psychologist),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정신과 의사(psychiatrist)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Cashwell, Kleist, & Scofield, 2009), 대부분의 주에서는 각 직종에 대해 개별적인 법률을 두고 해당 직종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사를 위한 법제화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에 관한 법률 규정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미국 각 주에서는 전문상담사 또는 전문상담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준칙, 조례 등으로도 상담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담사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법률로 규정된 내용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전문상담사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부처 또는 관련 위원회(board)에서 정하는 준칙, 조례 등으로 규율하는 주는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주는 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하위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미국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의 시기 및 방법

상담 관계에 있어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상담사는 각 내담자에게 상담 관계 및 상담 과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주도 있다(California).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내담자에게 사전 고지되어야 할 내용



표 1. 상담사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주 및 해당 규정

No.	州	전문상담사의 정보제공 관련 규정
1	Alaska	Ala. Code §08.29.220
2	California	Calif. Bus. & Prof. Code §§4999.70, 4999.74
3	Colorado	Colo. Rev. Stat. §§12-43-214, 12-43-222
4	Idaho	Idaho Code §54-3410A
5	Indiana	Ind. Code §§25-23.6-4.5-3, 25-23.6-4.5-4, 25-23.6-7-6
6	Iowa	Iowa Code §147.7
7	Kansas	Kan. Stat. §65-5817
8	Maine	Maine Rev. Stat. tit. 32, §13853
9	Maryland	Md. Code, Health Occ. Law §§17-506, 17-507
10	Michigan	Mich. Comp. Laws §333.18113
11	Minnesota	Minn. Stat. §148B.593
12	Montana	Mont. Code Ann. §37-23-203
13	North Carolina	N.C. Gen. Stat. §90-343
14	Ohio	Ohio Rev. Code §4757.13
15	Oklahoma	Okla. Stat. tit. 59, §59-1916.1
16	Oregon	Ore. Rev. Stat. §675.755
17	Pennsylvania	Pa. Act of Jul. 9, 1987 (P.L. 220, No. 39 Cl. 63) Sec.20.1.
18	South Carolina	S.C. Code §§40-75-250, 40-75-270
19	South Dakota	S.D. Codified Laws §36-32-21
20	Texas	Texas Occ. Code §503.314
21	Vermont	Vt. Stat. tit. 26, §3274
22	Virginia	Va. Code §54.1-3506-1.
23	Washington	Wash. Rev. Code §18.225.100
24	Wisconsin	Wis. Stat. §457.04
25	Wyoming	Wyo. Stat. §33-38-111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제공의 시기**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담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before/prior to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counseling”)에 상담과 관련된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laska, Maine,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Washington 등). 특히 Michigan 같은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함과 동시에 정보제공의 대상을 예비내담자로 규정하여("to prospective client before engaging in counseling services")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상담관계가 시작되는 때("at the beginning of a client-therapist relationship")(Kansas), 상담 시작 시 및 다른 적절한 시기("at the beginning and at other appropriate times")(Idaho), 내담자와 처음 만나는 동안("during the initial client contact")(Colorado), 첫 회기 전 또는 첫 회기 중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before or during the first session and upon request")(Wyoming)로 규정하고 있다.

#### 정보제공의 방법

상담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은 서면으로("in writing")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provide a copy")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olorado, Washington 등). 모든 내담자에게 문서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도 있고(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South Carolina 등), 내담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상담 장소 중 잘 보이는 곳에 제공되는 정보를 게시할 것("conspicuously display a professional disclosure statement at his place of business or at the principal location where his services are performed")을 규율하는 주도 있다(Maryland, Pennsylvania, Wyoming 등). Kansas 주에서는 내담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줄 것을 의무화("shall inform")하고 있지만, 문서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내담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 상담사의 기본정보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상담사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 연락처이다 (Alaska, Colorado, Maine, Maryland, Michigan,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Wyoming 등).

#### 상담사의 자격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담사가 취득한 자격증 또는 면허 등을 상담사가 주로 상담을 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의무("must display the license in a prominent and conspicuous place")를 규정하고 있다(California, Indiana, Maryland, Montana, Ohio, South Carolina, South Dakota, Virginia 등). Idaho 주에서는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에 자격증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Iowa에서는 자격증 또는 면허의 게시가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board)가 상담사에게 게시를 요구("may require")할 수 있다. 즉 많은 주에서 상담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격증이나 면허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 뿐 아니라 상담사가 취득한 자격의 구체적인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도 있고(Kansas, North Carolina 등), 자격의 취득일과 유효기간을 명시하라고 규정한 주도 있다(Maine).

Colorado의 경우, 상담사의 면허(licensure), 등록(registration), 자격(certification)의 취득 절차 및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 단계 별 법정 교육, 경험, 수련 요건의 차이 또한 설명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상담사의 학력

상담사의 학력 또한 정보제공의 대상이다. 상담사가 받은 교육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규율한 주가 있는 반면(예컨대 Michigan, Oregon), 전문상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상담사가 어떠한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상담 관련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내담자에게 명시적으로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주도 있다(Alaska, Idaho, Indiana, Maryland, Pennsylvania, Wyoming 등). 예컨대 Idaho 주에서는 (1) 상담사의 전공이 구체적으로 상담인지 또는 관련 분야인지 여부도 밝혀야 하고 (2) 취득한 학위를 수여한 기관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Kansas에서는 상담사의 학위가 석사인지 박사인지를 밝히도록 명문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담사가 의학박사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점과 특정 정신병리는 의학적,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정신과 의사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상담사의 경력

상담사의 학력 뿐 아니라 상담 관련 경력도 정보제공의 대상이 된다. 많은 주에서 상담사가 어떠한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수련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ansas,

Michigan, Oregon, South Carolina, Washington, Vermont 등). Oregon 주에서는 상담사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및 수퍼비전의 요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상담사의 전문 영역("area of specialization")을 제시하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다(Alaska, Maryland, South Carolina 등). 이처럼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담사의 기본 정보와 상담사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내담자에게 사전에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상담에 관한 내용

상담사에 관한 정보 외에도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Oregon에서는 상담 철학과 접근방식, Pennsylvania에서는 상담 윤리와 상담의 접근방식을 내담자에게 사전에 제시하도록 한다. Washington에서는 상담의 이론적 배경 또는 방향성("orientation")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치료개입의 과정에 대한 제안("proposed course of treatment")을 하도록 규정하기도 하고 (Maine, Washington 등), 구체적인 상담의 방법, 기법, 지속 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기도 한다(Colorado). North Carolina에서는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service offered")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기도 한다.

### 상담 비용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상담 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Alaska, Maine, Maryland, Michigan, North Carolina,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Washington 등). 예컨대 Ohio 주의 규정(Ohio Rev. Code §4757.13)은 상담사가 상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장소에 상담료에 대한 정보를 잘 보이게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prominently display the license holder's fee schedule in the office or place where a major portion of the license holder's practice is conducted.”).

###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

Colorado 주와 Washington 주에서는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에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먼저 Colorado 주에서 인정되는 내담자의 권리에는 상담의 방법, 기술, 기간, 비용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자신의 호소문제에 대해 제3의 상담사로부터 다른 견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또 언제든지 상담을 종결(“terminate”)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Washington에서는 내담자에게 상담을 거절(“refuse treatment”)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이나 상담사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Virginia에서는 상담사가 비윤리적, 기만적, 비전문적 행동을 하는 경우 관련 행정부서에 보고할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비밀보장의 원칙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법률, 조례, 규칙으로 비밀보장의 원칙 및 그 예외의 상황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할 상담사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은 상담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별도의 조문

을 통해 선언하거나, 상담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만 정보공개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Wyoming 주(“The professional disclosure statement shall contain... statement of confidentiality”)와 Washington 주(“must provide clients... with accurate disclosure information concerning... the extent of confidentiality provided by this chapter”)가 비밀보장의 원칙과 그 범위를 사전에 제시할 것을 규율하고 있다.

### 성적 관계의 금지 원칙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관계는 윤리 강령 뿐 아니라 법률로도 규제를 받는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고 이를 상담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성적 관계가 금지된다는 점을 사전에 내담자에게 고지할 것을 규율하고 있다. Colorado는 전문적인 관계에서는 성적 친밀감이 적절하지 않고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in a professional relationship, sexual intimacy is never appropriate and should be reported to the board”)고 정하고 있다. Wyoming 주도 유사하게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South Carolina 주의 경우에는 금지된다(“is prohibited”)라고 명시하고 있다.

### 위원회(board)에 관한 정보

상담사의 자격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관한 기본 정보를 내담자에게 사전에 제시할 것을 규정하는 주가 있다. 예컨대 Colorado, Michigan, Oregon 등의 주에서는 위원회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Virginia에서는 추가적으로 상담사의 기록을 볼

수 있는 행정부서의 홈페이지 주소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isconsin에서는 내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에 대한 민원절차("grievance resolution procedure")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Virginia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민원 전화 번호("toll-free complaint line")를 안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Vermont에서도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

미국 법률에 따른 상담사의 정보제공 관리 방안

### 정보 제공 위반 시 조치

일반적으로 법률은 해당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다. 미국의 상담사 관련 법률도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자격 취소, 정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담사의 사전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 일부 주에서는 상담사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North Carolina 주의 규정(N.C. Gen. Stat. §90-343)은 상담사가 자신의 면허에 관한 정보, 서비스의 내용, 상담비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설명서를 내담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내담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may not charge a client or receive remuneration for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 정보제공설명서의 승인 절차

Michigan과 Oregon 등의 주에서는 상담사의 자격을 관리하는 위원회 또는 행정부서로 하여금 자격 심사 시 또는 자격 부여와 동시에 상담사의 정보제공설명서(disclosure statement)를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상담사는 자신이 작성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해당 위원회 또는 행정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사가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새 설명서를 재승인 받아야 한다(Oregon). Maine 주의 규정(Maine Rev. Stat. tit. 32, §13853)은 위원회가 표준화된 정보제공설명서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The board may adopt, by rule, a standard disclosure statement.").

### 소 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상담사의 사전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주는 25개 주이고 그 규정의 세부 사항은 크게 정보제공의 시기 및 방법, 정보의 내용, 상담사의 정보제공 관리 방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이 중에서 정보의 내용은 다시 크게 상담사에 대한 정보(기본 정보, 자격, 학력, 경력 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상담 철학, 개입방법, 비용 등),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비밀보장, 성적 관계 금지 원칙 포함), 그리고 관리 기관 및 민원절차에 관한 정보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상담사들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논의

정보제공(disclosure of information)과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의 구분에 관한 논의

한국의 경우, 상담 및 상담사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국에서와 같이 사전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법인 민법상의 논의에 따르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김중길, 2017; 최현숙, 2006). 즉, 상담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에 기반 하는 전문 서비스이고 상담사 자체가 치료의 요소로서 상담사 개인의 학력, 수련, 경험이 상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상담 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가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스스로 취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담사에게는 상담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잠재적 내담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담 실무에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를 적용하여 공정한 상담계약 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제공의무라는 개념을 설명의무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담에 있어서 설명의무란 상담의 구조화 단계에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기 위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 시작 전에 상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 김인규(2002)는 상담 전

내담자 교육, 오리엔테이션, 구조화 등의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는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내담자의 불안한 마음을 다루고 상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즉, 오리엔테이션이나 구조화를 통해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은 이미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및 동기를 향상시키는 상담의 과정 중 하나인 것이다. 하혜숙과 조남정(2012)의 연구 또한 사전 동의를 받는 시기가 상담 전후, 접수면접 전후, 신청서 작성 시, 상담 중 필요시, 문제소지 발생 시 순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어 사전 동의가 상담과정의 일부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정보의 제공(disclosure of information)은 상담계약의 체결 전에 잠재적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담 서비스 계약의 체결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정보제공의무와 설명의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위계찬, 2007, 임건면, 2015), 상담 현장에서는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을 잠재적 수요자와 상담을 받기로 이미 결심한 내담자로 구분하여 보다 명확하게 두 개념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모든 주가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 전에 예비 내담자에게(“to prospective client before engaging in counseling services”)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는 주도 있다(Mich. Comp. Laws §333.18113). 한국 상담에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정착된다면 산재해 있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담 관련 교육과정,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담 과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림으로서 상담의 수요자를 증가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제공의무는 상담의 홍보 및 안내 단계에서 더욱 의미를 가지고,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 정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논의

상담계약 체결 전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상담 자격을 관리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이하 ‘학회’로 통칭)에서 표준 정보제공설명서(disclosure statement)를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Maine 주에서도 상담 관련 위원회가 기준이 되는 정보제공 설명서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Main Rev. Stat. tit. 32, §13853). 이처럼 학회 차원에서 표준안을 제공한다면 상담의 잠재적 수요자는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상담계약 체결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안을 제공하게 되면 상담사 개개인이 상담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각 상담사로 하여금 학회에 정보제공설명서를 개별적으로 승인 받게 하는 방법(예컨대 Mich. Comp. Laws §333.18113; Ore. Rev. Stat. §675.755)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학회 차원에서 일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면, 상담이나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향상될 뿐 아니라,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학회와 그렇지 않은 기타 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전에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는 학회 소속의 상담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 정보제공의 내용에 관한 논의

표준 정보제공설명서를 제작한다고 할 때 어떠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법률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표준 설명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상담사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을 포함하는 상담사에 대한 정보, 상담 철학이나 개입 방법 등을 포함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밀보장 등과 관련된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담사 관리 기관 및 민원절차에 관한 정보이다. 이처럼 미국 법률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정보를 계약 체결 전에 공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표준약관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관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량의 상세하고 어려운 계약의 조건들을 나열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을 뿐 아니라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김주석, 2016).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전문상담에 대해 무조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보제공설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상담사와 관련하여서는 상담사의 자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상담 관련 자격증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격의 종류나 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담사의 자격에 따른 직무와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하지만 현재 상담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동의에 포함시키는 것의 적합성과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상담사의 전문성을 동의서에 포함시키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혜숙, 조남정, 2012). 따라서 상담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사항 및 그 공개 여부를 상담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각 학회에서 상담사의 자격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담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상담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급수별 수련 내용만을 달리할 뿐, 급수에 따른 상담의 전문성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예컨대 한국상담심리학회(2018)의 상담심리사자격증 소개). 상담의 수요자가 상담사의 전문성과 그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상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자신의 신분 또는 자격, 즉 슈퍼바이저의 전적인 지도·감독 하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상담수련생인지, 꾸준히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2급 자격 취득자인지,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상담을 하는 2급 자격 취득자인지,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수련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1급 자격 취득자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각 급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한지, 상담역량이 어떻게 다른지, 또 상담의 범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각 급수에 따른 슈퍼바이저의 역할 및 책임 정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상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자격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상담사와 상담관계를 형성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상담사가 상담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여 상담사의 교육적 배경을 알릴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상담사의 학위 뿐 아니라 학위를 취득한 기관이나 수강한 과목 등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는 상담의 수요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학위를 부여하는 대학의 명칭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기관의 명칭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CACREP(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Programs)과 같이 1980년대부터 상담 관련 대학원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 달리(Even & Robinson, 2013), 한국에서는 상담관련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김인규 등, 2013;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관련 학과 또한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예컨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 3] “상담관련분야란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상담사의 구체적인 수강 과목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분석한 최혜림과 김영혜(2006)의 연구도 한국 대학원의 교육 과정에는 상담 훈련이 부족하여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졸업 후 전문가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의 교육적 배경이 상담사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언급한다.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및 상담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에 도입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상담사의 교육적 배경을 상담계약 체결 전에 일괄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의 진행 형태 및 상담비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점, 이를 위해 접수 이후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50-60분 정도 회기가 진행된다는 점 등의 형식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 서비스의 반대급부인 상담료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상담계약의 본질적인 측면일 뿐 아니라, 상담료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가 무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 기간 등이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기 당 상담료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물론 그 외에 상담과정의 내용적 측면, 즉 상담의 목적이나 적용 기법, 유익한 점이나 한계점 등에 대한 정보도 내담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지만(김인규, 2004),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 보다는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구조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각 학회의 윤리강령에 근거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규(2004)는 한국

과 미국의 대표적 상담 관련 단체들의 윤리강령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권리를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 의사결정의 권리, 동의능력의 결여 시 권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상담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즉 자신에게 맞는 상담사 및 상담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음과 언제든지 상담 개입을 거절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김인규, 2004; Colo. Rev. Stat. §§12-43-214, 12-43-222; Wash. Rev. Code §18.225.100). 이와 더불어 내담자는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지고(김인규, 2004), 그 중 핵심인 비밀보장원칙 및 그 제한점에 대한 설명은 계약 체결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비밀이 보장된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잠재적 내담자들의 상담 계약 체결 의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에 대한 민원절차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잠재적 수요자들이 상담을 시작한 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담사의 비윤리적, 비전문적 상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정보제공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것 보다는 학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민원절차는 내담자 보호의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이지만 상담 서비스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인 자료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회는 홈페이지 상에서 내담자들이 쉽고 빠르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 및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담 계약을 체결한 후 상담의 구조화 단계에서 사전 동의서를 통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계약체결 전후를 구분하여 사전에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잠재적 수요자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을 돕는다면 상담에 대한 수요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상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에 따라 일정한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면 상담사의 교육, 수련 등의 요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민간 자격증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되며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또한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상담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의 시각으로 검토하였다. 추후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와 상담 윤리와의 관계 및 상담 실무에서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국 각 주에서 상담사의 정보제공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미국의 법률 규정 내용이 한국 상담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법률 뿐 아니라 조례, 준칙 등을 통해서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내용을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는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에 초점을 두었는데, 추후 계약 체결 이후에 발

생하는 설명의무와의 비교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제공설명서와 사전 동의서의 내용 및 방식 등을 비교·개발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소양과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들을 양성하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상담의 법제화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상담사들에게 현행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상담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상 어떠한 공백이 있고, 그 공백을 통해 어떠한 법익이 보호받지 못하는지, 또는 어떠한 규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사들이 현행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의 전문 서비스로서의 특징 및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 및 소통이 필요하다. 상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상담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 특히 전문 상담 서비스란 무엇인지, 자격에 따른 상담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학회 차원에서는 소속 상담사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제공설 명서 양식 뿐 아니라 사전 동의서, 내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 등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여 상담사 뿐 아니라 상담의 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스스로의 권리·의무를 잘 인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학회와 그렇지 않은 기타 기관은 결국 수요자들의 선택에 의해 시장에서의 존부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상담계약 체결 전 상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와 상담 수요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우리나라 민법과 미국 법률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곽미용, 이영순 (2010). 상담자 자격의 윤리적 문제. 인문학논총, 15(1), 235-253.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김기우 (2011). 계약 성립에서 합의에 관한 논의와 우리나라 민법에 편입 가능한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 재산법연구, 28(1), 317-340.

김상중 (2010).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56, 1-45.

김상중 (2013).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

의 소개와 분석. 비교사법, 20(4), 973-1032.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사 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26.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김인규 (2002). 상담전 교육 영상자료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인규 (2004). 내담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5(4), 19-36.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김재원 (2008). 미국 法源에의 체계적 접근. 성균과법학, 20(2), 675-695.

김정진 (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김주석 (2016). 보험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와 우리의 보험영업실무. 고려법학, 81, 395-459.

김준호 (2018). 채권법. 법문사.

김중길 (2017). 전문직 서비스계약의 급부의무로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변호사 계약, 의료계약의 예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4(2), 771-812.

명대정 (2000).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주요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의 선례분석

- 을 기초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오식 (2009).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29(1), 81-119.
- 신영수 (2010). 미국 법전의 편재방식과 법령 정보의 검색·인용방법. *법학논고*, 32, 677-708.
- 위계찬 (2007).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법학*, 23(2), 167-198.
- 윤남순 (2002). 제59회 한남법학 학술포럼 미국 보통법 체계에서의 성문법. *과학기술법 연구*, 8(1), 117-126.
-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 과정 표준화 연구. *상담학연구*, 40(2), 231-250.
-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87-607.
- 이인호 (2009).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입법평가 기준틀의 모색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38(1), 181-214.
- 임건면 (2015).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7(2), 145-174.
- 임형택 (2015). 보통유류매매법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 59, 117-146.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최현숙 (2006).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경성법학*, 15(2), 233-251.
- 하혜숙, 조남정 (2012). 개인상담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3(3), 1101-1118.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상담심리사자격증 소개. [http://krcpa.or.kr/sub03\\_1\\_1.asp?menuCategory=3](http://krcpa.or.kr/sub03_1_1.asp?menuCategory=3) 에서 검색.
- Brooks, D. K., & Gerstein, L. H. (1990). Counselor credentialing an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5), 477-484.
- Cashwell, C. S., Kleist, D., & Scofield, T. (2009). A call for professional unity. *Counseling Today*, 52, 60-61.
- Even, T. A., & Robinson, C. R. (2013). The impact of CACREP accreditation: A multiway frequency analysis of ethics violations and sanc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1), 26-34.
- Gale, A. U., & Austin, B. D. (2003). Professionalism's challenges to professional counselors' collective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1), 3-10.
- Heppner, P. P., Leong, F. T. L., & Chiao, H. (2008). A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pp. 68-85). Hoboken, NJ: Wiley.
- Lee, S. M., Suh, S., Yang, E., & Jang, Y. J. (2012).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ounsel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4), 494-499.
- Leong, F. T. L., & Blustein, D. L. (2000). Toward a global 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 Counseling Psychologist*, 28(1), 5-9.
- Pound, R. (1908). Common law and legislation. *Harvard Law Review*, 21(6), 383-407.
- Remley, T. P., & Herlihy, B. (2010).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Rubin, P. H. (1982). Common law and statute law.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11(2), 205-223.
- Wilson, G. (2007). Comparative legal scholarship. In M. McConville & W. H. Chui (Eds.), *Research methods for law* (pp. 87-103).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18. 10.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8. 11. 19  
계 재 결 정 일 : 2018. 12. 04

## **The Counselo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the Counselor-Client Contractual Relationship**

**Ahram Lee**

Korea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to legalize the field of counseling. In alignment with such efforts, the present study examines a counselo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in Korea. Counseling is a type of service that involves counselors'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s well as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quantity of information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regarding the counseling service markedly differ. For both parties to sign a fair counseling contract, counselors should provide essential counseling-related information to client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counseling contract. To determine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disclosure statemen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of each state in the US were examined and categorized. Based on this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Korean counselors' disclosure statement are proposed.

*Key words :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counseling contract, legalization of counseling, US legislation*